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6년 1월 19일
-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2026년 1월 21일
- 라. 상정일자: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시각장애인은 정보 습득과 문화생활 향유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점자의 보급과 활용은 필수적임. 관내 시각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종합적인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문화적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안 제1조 ~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 ~ 제6조)
-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 사용, 점자 보급과 지원(안 제7조 ~ 제8조)
-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9조 ~ 제10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한글 점자의 날(안 제11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우리나라의 점자 사용 환경은 미비하여 점자의 이용·학습·문서 작성 등에 제약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입법·사법·행정 영역은 물론 교육·취업 및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를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하는 등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점자법」이 제정(2016. 5. 29., 시행 2017. 5. 30.)됨.
- 한편,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2024년 점자 사용 양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92.9%가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점자도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생활 편의시설 및 지역사회 기관·시설에서의 점자 사용에 대한 필요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공공 영역에서의 점자 지원 확대 필요성이 확인됨.
 - 아울러, 조사 결과에서는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45.0%)’와 더불어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30.0%)’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점자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영등포구 차원에서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점자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점자 인식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한편, 영등포구의 시각장애인은 2026년 1월 기준 1,496명으로 파악됨.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조례 전반에 걸쳐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의를 준용하고, 아울러 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공건축물’ 및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대상 시설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는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가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명시하고, 점자 사용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이는 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적절히 규정함.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는 법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제8조(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구 차원의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실태조사)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 인식 수준, 점자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안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를 규정하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권장 하며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적 정보 접근성을 개선 하고자 함.
- 안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는 공공 및 민간 행사에서의 점자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제작·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점자 자료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의 문화·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한편, 집행부서에 따르면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이 설치·운영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 해당 시설이 조성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신규 시설 조성을 유도하고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는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경우 「점자법」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함. 이는 점자 공문서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시각 장애인의 행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는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점자문화 확산을 도모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는 점자 인식개선, 점자교육, 점자 사용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2조(한글 점자의 날)는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점자 사용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2024년 점자 사용 양상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점자도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 ▲생활 편의시설 및 지역사회 기관·시설에서의 점자 사용에 대한 낮은 만족도 등 점자 사용 환경의 미비점과,
 -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 ▲관련 정책·법규 강화 등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및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 및 지원 ▲점자문화 확산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과 점자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3
----------	-----

발의연월일: 2026. 1. 19.

발의자: 이성수 · 전승관 · 이예찬
정선희 의원(4인)

1. 제안이유

시각장애인은 정보 습득과 문화생활 향유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점자의 보급과 활용은 필수적임. 관내 시각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종합적인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문화적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안 제1조 ~ 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 ~ 제6조)
- 다.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 사용, 점자 보급과 지원(안 제7조 ~ 제8조)
- 라.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9조 ~ 제10조)
- 마.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한글 점자의 날(안 제11조 ~ 제12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점자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